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수·추징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 근거 신설 등>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21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공연 입장권등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 (안 제4조의2제1항 등)	4
2. 몰수·추징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 근거 신설(안 제42조의2제 2항 신설)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1. 16.

다. 회 부 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부정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 상향,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핵심 재원이거나 기금 수입의 감소와 재원 고갈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수요 확대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 재원의 취약성은 이러한 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적 제재 방안을 도입하며, 몰수·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의 확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의2제1항).
-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2항).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 라.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마.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공연 입장권등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 (안 제4조의2제1항 등)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각각 정의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며(안 제4조의2제1항),

입장권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4조의2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 부정거래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할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아울러,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하여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안 제4조의4 신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7조의2 신설),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한편(안 제42조의2제1항 신설),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

현행	개정안
<신설>	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

현행	개정안
	<u>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1. <u>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판매일시, 구매·판매가격, 구매·판매수량)</u> 2. <u>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u> 3. <u>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u> 4. <u>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u> 5. <u>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u> ④ <u>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 ⑤ <u>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u> 1. <u>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 2. <u>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u>

현행	개정안
	<u>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u> 3. <u>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u> 4. <u>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u> ⑥ <u>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⑦ <u>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생략) <u><신설></u>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현행 제4조의3과 같음)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현행	개정안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생략) <u><신설></u>	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 ----- -----. 1. 제4조의2제1항을----- 2. ~ 6.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6. (생략) ④·⑤ (생략)	제42조의2(몰수·추징) ①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한편, 개정안 발의 당시 입장권등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의 금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 부과, 신고기관 지정, 과징금 부과,

포상금 지급, 부정판매 이익 몰수·추징 및 과태료에 관해서는 이미 동일한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6. 1.29)되어, 시행될 예정임.

이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라기보다는, 이어서 검토할 “몰수 및 추징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납입 근거 신설(안 제42조의2제2항 신설)”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안과 내용이 동일한 공연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제재 및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검토를 생략하기로 함.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2151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2025.11.28., 법사위 의결 2025.12.10., 본회의 의결 2026. 1.29.)

2. 몰수·추징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 근거 신설

(안 제42조의2제2항 신설)

개정안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2(몰수·추징) ①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집행된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안 제42조의2제1항은 안 제41조제1호2)에 해당하는 자, 즉 입장권등

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제2216121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³⁾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① 정부의 출연금, ②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③ 기금 운용 수익금, ④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납입받는 출연금,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음.

또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⁴⁾는 “그 밖에 대통령

-
1. **부정구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의 범위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과거 공연·전시 관람료 등에 부과되던 부담금이 주요 재원이었으나,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⁵⁾으로 해당 부담금이 폐지된 이후 자체 수익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음.

이에 따라 현재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⁶⁾에 따른 복권기금,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가2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초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경륜·경정법」 제18조7)에 따른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임.

이러한 재원은 복권 판매량이나 경륜·경정 수익금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수입 규모가 달라지고,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입금 규모가 결정되는 한시적·유동적 편성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정책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경륜·경정법」

제15조(발매이익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 기반을 다각화하고 외부 재원의존도를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42조의2제2항은 몰수 또는 추징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몰수”는 「형법」 제41조⁸⁾에 따른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징”은 형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형법」 제48조⁹⁾에서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

8)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9)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벌의 부가형¹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안 제42조의2제2항과 같이 형의 종류 중에서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등)¹¹⁾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제2항¹²⁾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명

-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10)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1) 벌금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을 거쳐 집행되는 재산형이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 또는 추징금 역시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집행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절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1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시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로부터 납부되는 “벌금”이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사업과의 긴밀한 연계성¹³⁾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범죄(가해자)’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만, 국가는 “벌금”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벌금”을 “범죄피해 회복”에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됨¹⁴⁾.

한편, 「국가재정법¹⁵⁾」 [별표 2] 에서 열거하고 있는 68개의 기금 중에서 “벌금” 등 재산형의 형벌을 조성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움.

1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1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1806337)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11.) 참조

15)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재산형 등 형벌의 일차적인 목적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질서 유지에 있고, 특정 분야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금이 특정 정책 재원으로 직접 연결될 경우, 재원확보의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여타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금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이견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연 입장권등의 부정거래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24),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22),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수입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23)이 함께 발의되어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자원 확대 관련 개정안 현황 >

개정안	대표발의 (의안번호)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자원 추가
문화예술진흥법	김재원의원 (2216123)	· 「공연법」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금 · 「저작권법」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
공연법	김재원의원 (2216121)	·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금
저작권법	김재원의원 (2216124)	· 저작권 이용에 대한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김재원의원 (2216122)	· 법정배분 복권수익금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수요 확대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의 취약성은 이러한 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몰수·추징액 일부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몰수·추징금을 특정 기금으로 납입 의무화하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고, 몰수·추징은 법원이 선고하고 검찰이 집행하므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6. 1.29)되어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¹⁷⁾에도 압표 수익 몰수·추징 조항¹⁸⁾이 들어가 있는바, 공연 분야 몰수·추징금만 특정 기금의 재원으로 납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과거 공연·전시 관람료 등에 부과되던 부담금에 대한 2003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의 취지¹⁹⁾를 고려할 때,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압표상이 문화예술기금 납입 주체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안번호 22151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2025.11.28., 법사위 의결 2025.12.10., 본회의 의결 2026. 1.29.)

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안번호 22151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2025.11.28., 법사위 의결 2025.12.10., 본회의 의결 2026. 1.29.)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 제2215124호)

제51조(몰수·추징) ④ 제4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9)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반 국민인데도, 우연히 관람기회를 갖는다고 하여 이로써 여타의 다른 국민 또는 일반 납세자보다 문화예술진흥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하여 객관적으로 더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가2

한편, 법제처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일정한 기금을 어떤 재원으로 조성할 것인지는 해당 기금의 재원에 포함하려는 금원 등 재산의 성격, 그 재원과 기금 설치 목적의 연관성, 그와 같은 재산을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시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에 따라 몰수·추징되는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재산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세출예산의 재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특정한 기금의 재원으로 삼아 국가로 하여금 해당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법무부는 개별 법률에서 몰수·추징금을 특정 기금에 납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목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문예진흥법 제16조)
- **(용도)**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문예진흥법 제18조)
- **(수입원)**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및 여유자금 회수(문예진흥법 제17조)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예산	결산	예산	예산
수입	□ 자체수입	114,737	98,518	93,654	93,623
	○ 건물대여료	1,210	930	865	1,273
	○ 융자금 이자수입	908	1,158	974	921
	○ 적립금 이자수입	4,635	1,661	2,660	3,500
	○ 민간출연금	29,311	21,192	20,727	22,492
	○ 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금	50,296	37,716	36,153	30,034
	○ 입장료및기타잡수입	13,157	18,192	16,931	20,059
	○ 용자원금회수	15,220	17,669	15,344	15,344
	□ 정부내부수입	378,786	378,786	397,707	420,871
	○ 기금전입금	348,786	348,786	367,707	390,871
	체육기금 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110,000
	복권기금 전입금	248,786	248,786	267,707	280,871
	○ 일반회계전입금	30,000	30,000	30,000	30,000
	□ 여유자금회수	86,298	16,026	86,298	118,055
합 계		579,821	493,331	577,659	632,549
지출	□ 사업비	425,560	410,343	433,887	516,371
	○ 예술창작지원	58,814	58,297	64,677	69,118
	○ 예술인력육성	26,573	26,183	22,358	23,897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18,000	18,000	18,000	28,000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907	907	907	780
	○ 지역문화예술지원	-	-	-	-
	○ 예술의관광자원화	4,908	4,908	4,923	4,523
	○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24,169	23,445	27,919	29,341
	○ 문화예술향유지원	275,149	261,574	280,581	327,638
	○ 예술산업금융지원시범사업(용자)	-	-	-	20,000
	○ 한스타일육성지원	10,460	10,449	8,924	8,032
	○ 문화예술해외교류	1,753	1,753	910	822
	○ 공예문화산업육성	4,827	4,827	4,688	4,220
	□ 기금운영비	20,656	21,399	23,446	22,981
	○ 인건비	12,708	12,708	13,121	13,684
	○ 기타운영비	7,948	8,691	10,325	9,297
	□ 정부내부지출	20,591	39,233	22,253	22,572
	□ 여유자금운용	113,014	22,356	98,073	70,625